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및 지원방안 : 기관소속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경상**·박창남***

초 록

이 논문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정도와 직종, 노동시간, 임금, 근로환경 등의 근로여건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경험적 확인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기관에 소속된 학업중단 청소년들 828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68.8%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주로 학업중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육적인 업종에서 장시간 고임금의 준 직업적 성격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며 높은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불법고용에 대한 규제 강화, 적극적인 교육전개, 건전한 직종 소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의 인식의 전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학업중단, 아르바이트, 고용, 인적자원개발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방안'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임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매년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1.6%정도인 6만 5천여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정규학교를 떠나고 있다. 실업고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율이 4~5%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일반고 청소년들이 1.5~1.7%, 중학교 청소년들도 1.0%내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교육통계연보, 2000-2005). 청소년 학업중단이란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사망, 전학 이외의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이유 등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것을 말한다(Good, 1973; Page and Thomas, 1977; 표갑수, 1993; 황창순, 1996).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건강, 심리적인 문제 등의 개인적인 이유, 집안 경제사정의 악화나 불화 등 가정적인 이유, 학교 부적응, 일탈 등의 학교관련 이유, 아르바이트 등 노동시장 관련 이유 등 실로 다양하다(Bryk & Thum, 1989; Fine, 1991; Rumberger, 1995; Goldschmidt & Wang, 1999; 구자경 외, 2001; 김민, 2001; 서우석 외, 2001; 김혜영, 2002; 조아미, 2002; 박창남 외, 2001, 2003).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정교학교로 다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큰 시행착오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 자신의 다음 진로를 곧바로 설정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이들이 학업중단 이후 어떻게든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또는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곧바로 대안적인 교육기회를 활용하거나 직업훈련기회를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따라서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정책(학교상담 운영체제 혁신·실업계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 및 진로지도 강화 등)과 다시 정규 학교로 복귀할 생각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학교복귀 정책(박창남 외, 2001) 이외에 정규학교로 복귀할 생각이 없는, 즉, 기존의 정규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가 길을 만들어주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지원 정책(제도화된 대안교육 및 직업훈련기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곧바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기 보다는 아르바이트 등의 불완전 근로에 종사하면서 비행, 범죄 등에 빠져들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들(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나 학업중단 청소년들 모두)에게 있어 아르바이트 체험은 진로탐색 및 준비를 위한 직업체험의 의미보다는 단순한 용돈벌이의 의미를 띠고 있다(이철위 외, 2000). 불완전 취업의 근로이외에 다른 교육적인 의미는 크게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학업중단 개인의 손실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이 학업지향이나 취업지향의 진로트랙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전에 학업중단 이후의 불완전 고용상태의 시간제 취업인 아르바이트에 대한 불완전근로 보호정책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첫 번째 시간제 취업인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시간제 취업에 의한 불완전근로 보호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쉼터, 기타 보호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소속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 첫번째 시간제 취업인 아르바이트 참여유무의 실태, 직종, 임금, 노동시간, 근로환경 등의 아르바이트 참여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에 대한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론적인 모집단만 존재할 뿐, 표집틀이 부재하며, 따라서 양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논의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은 첫째, 성, 건강, 심리적인 문제 등의 개인적인 이유(Ekstrom, Goertz, Pollack, & Rock, 1986),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적 지원, 가족구조, 불화, 가정 경제사정의 악화 등의 가족관련 이유(Bryk & Thum, 1989; Ekstrom, Goertz, Pollack, & Rock, 1986; Astone & McLanahan, 1991), 셋째, 학교부적응, 차별, 일탈 등의 학교관련 이유(조혜정, 2001; Barrington & Hendricks, 1989), 넷째, 노동시장 관련 이유(D'Amico, 1984; McNeal, 1997)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곧바로 대안적 교육기회나 직업훈련기회 등의 대안적 진로를 설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로부터 이탈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학업중단 이후 불완전 고용상태의 시간제 취업인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전일제 취업형태(full time job)의 일자리가 주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현실속에서 가정에 대한 불만이 가출로 이어지고 다시 학업중단으로 이어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라면, 당연히 시간제 취업형태의 일자리를 찾아나설 것이고, 생계 문제가 학업중단의 주된 사유가 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전일제 취업형태의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 손쉽게 주어지는 시간제 취업의 일자리를 찾아나서게 될 것이며, 정규학교에서의 부적응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도 새로운 삶의 형태로 시간제 취업 형태의 일자리를 찾아나설 가능성이 높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약 30%내외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철위 외, 2000; 이혜정, 2000;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는 중학생 유무, 실업계 고교생 유무, 학교성적, 가출경험, 용돈과 같은 개인특성과 가정의 경제력, 부모 교육수준과 같은 가구특성이 중고등학생들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주요 관련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장원섭, 2001; 양정호, 2004).

또한 청소년들의 시간제 취업인 아르바이트가 장래 취업에 대비 사회경험을 쌓기 위한 진로트랙의 일환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시간제 취업인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이유는 진로 탐색 및 직업훈련기회의 의미일 가능성보다는 소비 및 생계지향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경제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학생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이철위 외, 2000).

한편 참여직종, 노동시간, 임금, 근로환경 등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시간제 취업인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의 재학생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분석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재학생인 학생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의 근로여건의 특징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서울 YMCA, 2000; 이철위 외, 2000; 이해정, 2000; 이광호 외, 2001;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2002;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2002; 유성렬, 2005).

첫째, 한국의 학생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전문적이지 않은 단순근로의 형태를 띠고 있어, 약간의 교육이나 지침만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과는 거리가 먼 비교육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단지 돌리기, 신문배달, 음식점 서빙,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당수는 불건전한 향락산업에 종사하기도 한다(서울 YMCA, 2000; 이철위 외, 2000; 이해정, 2000;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2002; 유성렬, 2005). 박물관이나 미술관 안내 등의 교육적인 업종의 아르바이트 형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18세 미만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근로환경에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전화방,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음반판매업,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적지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장시간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철위 외, 2000; 유성렬, 2005).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원칙적으로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가 없으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업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셋째, 한국 학생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낮은 임금 수준을 나타낸다(이철위 외, 2000;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2002).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학생이 상당수에 달한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취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라 할 지라도, 성인근로자 최저임금액의

90%인 최저임금(조사시점인 2003년 기준 2,048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들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임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청소년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필요한 치료 및 비용부담을 고용주가 하게 되어 있다.

넷째, 근로환경이 열악하다(이철위 외, 2000; 이해정, 2000;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2002; 박창남, 2004).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구타, 폭언, 성희롱 등의 인권유린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는 청소년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15세 미만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최저연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단 13세 이상 15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하면 취업이 가능), 취업이 허용되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근로자를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게 되어 있다.

재학생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여건의 이와 같은 특징들은 임금이 높고, 직업위세가 높으며, 직무만족도가 높은 특성을 나타내는 ‘좋은 일자리(Good Job)’의 특성과는 거리가 먼 ‘나쁜 일자리(Bad Job)’의 전형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방하남, 이상호, 2006).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시간제 취업인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한국의 재학생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근로여건의 특징들이 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훨씬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III.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대안학교(학력인정 학교/비인정 학교), 직업훈련기관, 쉼터, 선도보호시설 등의 청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나 시설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재학생 중 위탁교육생 및 비진학 청소년 제외)이다.

그런데 연구대상인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인 모집단은 존재하지만, 표집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목록이나 명부인 표집틀은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네이버, 다음, 엠파스, 야후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안학교, 쉼터,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기타 청소년보호시설을 검색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24개의 대안학교, 31개의 쉼터, 25개의 직업훈련기관, 12개의 소년원, 12개의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기관리스트를 확보(이러한 검색결과는 교육부의 대안학교 리스트 등 각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리스트를 총망라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관련 기관이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하였다. 이후 각 기관을 통하여 재학생(직업훈련기관의 위탁교육생의 경우), 비진학 청소년들을 제외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략적인 숫자와 규모를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작성가능한 최선의 표집틀부터 작성하였다. 그 결과 대안학교에 26%정도, 직업훈련기관에 23%정도, 소년원에 39%정도, 쉼터에 7%정도,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에 5%정도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다음으로, 표집은, 기관별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략적인 규모만 파악되어 있는 표집틀로는 확률표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비확률 표집방법 중 가장 정교한 표집방법인 할당 표집(quota sampling)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집하였다. 우선, 표집 목표표본수인 1,000명을, 대안학교(260명), 쉼터(70명), 직업훈련기관(230명), 소년원(390명), 기타 청소년보호시설(50명)의 각 기관별로 파악된 학업중단 청소년 분포 비율에 맞게 나누어, 각 기관별로 추출될 전체적인 표집규모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대안학교, 쉼터,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기타 청소년보호시설의 각 기관별로 소속 하위기관 중에서 표집대상기관을 선발하였다. 표집대상기관을 선발할 때는, 기관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질적 구성의 정도에 따라, 비교적 이질성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안학교, 쉼터,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되도록 많은 소속 하위기관을 표집대상기관으로 선발하고, 상대적으로 이질적 구성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직업훈련기관과 소년원 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속하위기관을 표집대상기관으로 선발하였다. 다만, 소년원 학교의 경우에는, 교과교육 소년원과 직업교육 소년원의 비율이, 모집단 구성에 맞게, 6:4 혹은 7:3의 비율로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다. 이에 따라, 24개의 대안학교 중 23개의 대안학교가, 31개의 쉼터 중 20개의 쉼터가, 12개의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중 10개의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이, 25개의 직업훈련기관 중 8개의 직업훈련기관이, 그리고, 12개의 소년원 학교 중 3개의 소년원 학교가 표집대상기관으로 선발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별로 설정된 기관별 표집규모를, 각 기관별 소속 하위기관 중에서 표집대상기관으로 선발된 하위기관의 파악된 학업중단 청소년 숫자에 비례하게 할당하여, 임의표집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2003년 7월 8일에서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집단면접에 의한 자기보고식(self-reported) 설문조사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최종적으로, 목표표본수인 1,000명 중에서, 조사과정상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전체 828명이 조사되었는데, 그 중, 대안학교가 278명, 직업훈련기관이 174명, 쉼터가 53명, 소년원이 280명,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이 43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애초의 계획에 비해, 대안학교가 약간 과대표집(6% 정도)되었고, 소년원이 약간 과소표집(6% 정도)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66.9%, 여자가 33.1%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업중단 시점별 분포로는 중학교 중간이 44.5%, 실업고 중간이 30.4%, 인문고 중간이 25.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IV. 분석결과

1.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

학업중단 이후 불완전 고용상태의 시간제 취업인 아르바이트 참여정도의 실태부터 살펴보았다.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68.8%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인 30%내외(이철위 외, 2000; 이혜정, 2000;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2002)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이 재학생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1> 학업중단시기별·성별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빈도, %)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합계	
		한번 이상 있다	전혀 없다		
전체		490(68.8)	222(31.2)	712(100.0)	
학업중단 시기	중학교	227(73.2)	83(26.8)	310(100.0)	$\chi^2 = 59.899^{***}$
	실업고	170(80.6)	41(19.4)	211(100.0)	
	인문고	72(44.7)	89(55.3)	161(100.0)	
성별	남	322(66.8)	160(33.2)	482(100.0)	$\chi^2 = 3.107$
	여	163(73.4)	59(26.6)	222(100.0)	

* p < .05, ** p < .01, *** p < .001

학업중단 시기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에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이 73.2%, 실업고를 다니다가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비율이 80.6%인데 비해 인문고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은 44.7%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학교 시기와 실업고 시기에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많은데 비해 인문고의 경우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비자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용돈벌이나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성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학업중단 이유별로 살펴보면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가 82.8%,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가 82.2%,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져서’가 64.8%, ‘재학 중 비행이나 범죄로’가 76.2%,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가 59.3%,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가 73.3%,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가 69.6%,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76.3%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적인 요인이든 학교관련 요인이든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다른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을 그만 둔 청소년들 중의 상당수가 많이 남는 시간을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생계형 용도로 아르바이트에 할애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반면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57.1%,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24.0%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로 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업중단이유별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빈도, %)

구 분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합계	
	한번 이상 있다	전혀 없다		
학업 중단 이유	건강상의 이유로	16(64.0)	9(36.0)	25(100.0)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9(56.3)	7(43.8)	16(100.0)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24(82.8)	5(17.2)	29(100.0)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에 대한 불만으로(무단결석, 가출 등)	106(82.2)	23(17.8)	129(100.0)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57(64.8)	31(35.2)	88(100.0)
	비행이나 범죄로	80(76.2)	25(23.8)	105(100.0)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서	67(59.3)	46(40.7)	113(100.0)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서(왕따 등)	11(73.3)	4(26.7)	15(100.0)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서(차별대우 등)	16(69.6)	7(30.4)	23(100.0)
	학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29(76.3)	9(23.7)	38(100.0)
	검정고시나 유학을 선택하려고	4(57.1)	3(42.9)	7(100.0)
	나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고 싶어서	6(24.0)	19(76.0)	25(100.0)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서	5(100.0)	0(0.0)	5(100.0)
	기타	21(61.8)	13(38.2)	34(100.0)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유무에 대한 배경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 재학 중 학업성적, 주관적 계층의식, 결손가족 여부 변수는 아르바이트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문고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비해 중학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일수록(Exp(B)=3.593***), 실업고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일수록(Exp(B)=5.202***) 더 많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르바이트 참여유무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아르바이트 참여유무(유=1)	
	B	Exp(B)
상수(절편)	.264	1.302
성별(남학생=1)	-.319	.727
재학 중 학업성적	-.033	.967
학업중단시기(인문고 중간=0)		
- 중학교 중간(=1)	1.279***	3.593***
- 실업고 중간(=1)	1.649***	5.202***
주관적 계층의식	-.131	.877
결손가족 여부(유=1)	.360	1.434
N	602	
-2Log-Likelihood	677.392	
Pseudo R2(Nagelkerke R2)	.158	

*p < .05, **p < .01, ***p < .001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용돈이 부족해서’가 37.4%,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33.1%로 높게 나타나 대체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참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는 9.2%에 불과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취업준비를 위한 것과는 관련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표 4>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참여이유 (빈도, %)

구 분	전체	성별	
		남	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161(33.1)	98(30.8)	60(36.8)
학비를 벌기 위해	2(0.4)	2(0.6)	0(0.0)
용돈이 부족해서	182(37.4)	122(38.4)	58(35.6)
취업(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45(9.2)	36(11.3)	9(5.5)
여가 시간을 활용하려고	55(11.3)	36(11.3)	18(11.0)
주위(부모, 친지 및 친구들) 권유로	20(4.1)	12(3.8)	8(4.9)
기타	22(4.5)	12(3.8)	10(6.1)
계	487(100.0)	318(100.0)	163(100.0)

2.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아르바이트 근로 여건

앞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68.8%가 학업중단이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이유는 주로 용돈이나 생활비 충당 등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을 살펴보았다. 대다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장의 근로여건은 어떠한가? 여기서는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기준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임금, 부당대우 등으로 나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의 근로여건을 살펴보았다.

<표 5>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아르바이트 참여업종 (빈도, %)

구 분	전체	성별	
		남	여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부착)	65(13.8)	40(12.8)	24(15.5)
신문 및 우유배달	23(4.9)	19(6.1)	4(2.6)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55(11.7)	33(10.6)	22(14.2)
24시간 편의점 점원	6(1.3)	1(0.3)	5(3.2)
일반상점 판매원	7(1.5)	4(1.3)	3(1.9)
비디오 대여점 카운터 및 서빙	5(1.1)	1(0.3)	4(2.6)
비디오방 카운터 및 서빙	51(10.9)	40(12.8)	11(7.1)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36(7.7)	24(7.7)	11(7.1)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13(2.8)	10(3.2)	3(1.9)
전화방 카운터 및 서빙	8(1.7)	7(2.2)	1(0.6)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4(0.9)	2(0.6)	2(1.3)
여관 카운터 및 서빙	4(0.9)	4(1.3)	0(0.0)
음식점(피자, 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 카운터 또는 배달	88(18.7)	61(19.6)	27(17.4)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25(5.3)	8(2.6)	17(11.0)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0.2)	0(0.0)	1(0.6)
주유소 주유원	45(9.6)	32(10.3)	13(8.4)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3(0.6)	3(1.0)	0(0.0)
건설현장 노동	5(1.1)	5(1.6)	0(0.0)
공장노동	8(1.7)	6(1.9)	2(1.3)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1(0.2)	0(0.0)	1(0.6)
아기, 노인 돌보기	1(0.2)	1(0.3)	0(0.0)
기타	16(3.4)	11(3.5)	4(2.6)
합계	470(100.0)	312(100.0)	155(100.0)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한 아르바이트 업종을 살펴보면, ‘음식점(피자, 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 카운터 또는 배달’을 한 경우가 18.7%로 가장 많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가 13.8%,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이 11.7%, ‘비디오방 카운터 및 서빙’이 10.9%, ‘주유소 주유원’이 9.6%,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을 본 경우’가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드는 아르바이트 업종이 몇몇 비교적적인 업종에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고용이 금지되지 않은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음식점(피자, 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 카운터 또는 배달’,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주유소 주유원’ 등이 대부분의 주종을 이루며, 청소년보호법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업종인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비디오방 카운터 및 서빙’,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에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중단 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의 전체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약 6개월 이상’이 21.9%로 가장 높고, ‘약 2개월’이 21.6%, ‘약 16-30일’이 19.6%, ‘약 1-15일’이 14.3%, ‘약 3개월’이 13.7%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재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중 과반수를 넘는 53.0%가 일주일도 안 되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있고 18%만이 한 달 이상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해 볼 때(이철위 외, 2000) 매우 긴 기간이다. 특히 ‘6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21.9%의 응답자에게 있어서는 아르바이트가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힌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개월 이하가 약 34%로 나타나 여전히 아주 짧은 기간동안만 지속하는 청소년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7일 내내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4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일(34.5%), 5일(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규직 근로와 비슷한 형태인 6-7일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가 ‘준 직업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0시간이 21.1%, 12시간이 19.7%로 매우 높고, 다음으로 8시간(8.9%), 6시간(6.9%), 5시간(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의 1일 청소년 근로제한시간인 8시간을 넘겨 근로한 비율이 약 63%로 나타나 과반수가 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법적인 근

로제한시간을 넘겨 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6>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전체 (빈도, %)

구 분	전체	성별	
		남	여
약 1-15일	65(14.3)	40(13.2)	25(17.4)
약 16-30일	89(19.6)	62(20.4)	25(17.4)
약 2개월	98(21.6)	68(22.4)	28(19.4)
약 3개월	61(13.7)	40(13.2)	21(14.6)
약 4개월	27(6.0)	21(6.9)	6(4.2)
약 5개월	13(2.9)	6(2.0)	7(4.9)
약 6개월 이상	99(21.9)	67(22.0)	32(22.2)
계	452(100.0)	304(100.0)	144(100.0)
		$\chi^2 = 6.216$	

* p < .05, ** p < .01, *** p < .001

<표 7>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일주일기준 (빈도, %)

구 분	전체	성별	
		남	여
1일	15(4.4)	11(4.8)	4(3.7)
2일	10(2.9)	8(3.5)	2(1.9)
3일	9(2.6)	4(1.7)	5(4.6)
4일	10(2.9)	7(3.0)	3(2.8)
5일	36(10.6)	25(10.9)	11(10.2)
6일	118(34.6)	80(34.8)	37(34.3)
7일	143(41.9)	95(41.3)	46(42.6)
계	341(100.0)	230(100.0)	108(100.0)

<표 8>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아르바이트 지속기간-하루기준 (빈도, %)

구 분	전체	성별	
		남	여
1시간	8(2.2)	7(2.9)	1(0.9)
2시간	4(1.1)	1(0.4)	3(2.7)
3시간	12(3.3)	8(3.3)	4(3.6)
4시간	12(3.3)	8(3.3)	4(3.6)
5시간	25(6.9)	11(4.5)	14(12.5)
6시간	25(6.9)	13(5.3)	12(10.7)
7시간	17(4.7)	11(4.5)	6(5.4)
8시간	32(8.9)	22(9.0)	9(8.0)
9시간	23(6.4)	18(7.3)	5(4.5)
10시간	76(21.1)	60(24.5)	16(14.3)
11시간	15(4.2)	11(4.5)	4(3.6)
12시간	71(19.7)	59(24.1)	11(9.8)
13시간	13(3.6)	6(2.4)	7(6.3)
14시간	9(2.5)	2(0.8)	6(5.4)
15시간	8(2.2)	3(1.2)	5(4.5)
16시간	6(1.7)	1(0.4)	5(4.5)
17시간	2(0.6)	2(0.8)	0(0.0)
18시간	2(0.6)	2(0.8)	0(0.0)
계	360(100.0)	245(100.0)	112(100.0)

셋째, 아르바이트의 시간당 보수를 살펴보면 '5,000원 초과'가 22.3%로 가장 높고 '2,500원 초과~3,000원 이하'가 19.8%, '2,000원 초과~2,500원 이하'가 19.2%로 나타났다. 기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조사와 비교해보면 보수의 수준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이철위 외, 2000). 이러한 차이는 업무내용과 아르바이트 종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규직과 거의 다름없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은 실제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준 정규직의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간당 '5,000원 초과'는 거의 유흥업종에 관련된 아르바이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와 반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2002년 9월 1일~2003년 8월 31일까지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2,048원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의 응답자가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시간당 보수 (빈도, %)

구 분	전체	성별	
		남	여
1000원 이하	7(2.2)	6(2.7)	1(1.1)
1000원 초과 ~ 1500원 이하	17(5.3)	11(4.9)	6(6.4)
1500원 초과 ~ 2000원 이하	38(11.8)	23(10.2)	15(16.0)
2000원 초과 ~ 2500원 이하	62(19.2)	35(15.5)	26(27.7)
2500원 초과 ~ 3000원 이하	64(19.8)	51(22.6)	13(13.8)
3000원 초과 ~ 4000원 이하	40(12.4)	32(14.2)	7(7.4)
4000원 초과 ~ 5000원 이하	23(7.1)	20(8.8)	3(3.2)
5000원 초과	72(22.3)	48(21.2)	23(24.5)
계	323(100.0)	226(100.0)	94(100.0)

넷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가 27.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가 14.4%,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가 24.1%,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가 16.3%,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가 19.3%,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가 36.0%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가 35.1%,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가 17.9%,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가 9.5%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기존의 재학생조사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이철위 외, 2000).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일을 하는 도중 고용주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청소년을 문제아로 낙인찍어 일하는 도중 훨씬 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표 10-1>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아르바이트 부당경험 (빈도, %)

구 분	그런 적 있다	그런 적 없다	계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16(27.2)	310(72.8)	426(100.0)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59(14.4)	350(85.6)	409(100.0)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99(24.1)	312(75.9)	411(100.0)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66(16.3)	340(83.7)	406(100.0)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79(19.3)	331(80.7)	410(100.0)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153(36.0)	272(64.0)	425(100.0)

<표 10-2>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아르바이트 부당경험 (빈도, %)

구 분	여러 번 있다	한두 번 있다	전혀 없다	계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50(12.0)	96(23.1)	270(64.9)	416(100.0)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21(5.1)	53(12.8)	340(82.1)	414(100.0)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12(2.9)	27(6.6)	372(90.5)	411(100.0)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처행위를 살펴보면,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참고 일하였다’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인이나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다’가 23.6%, ‘항의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중단하였다’가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나 가족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12.6%, ‘경찰이나 노동사무소 등 공식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적극적인 대처유형의 응답은 4.3%에 그쳐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행위가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대부분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 그리고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표 11>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대처방안 (빈도, %)

구 분	전체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참고 일하였다	120(47.2)
항의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중단하였다	31(12.2)
주인이나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60(23.6)
친구나 가족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32(12.6)
경찰이나 노동사무소 등 공식 관련기관에 신고했다	11(4.3)
계	254(100.0)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살펴보면, ‘작성했다’가 16.1%, ‘작성하지 않았다’가 83.9%로 나타나,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 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에게 제출했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제출했다’가 33.3%, ‘제출하지 않았다’가 66.7%로 나타나, 약 2/3의 응답자가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인 제도로부터 자신의 아르바이트 환경을 지켜나기는데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무지하거나 소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및 부모동의서 제출 여부 (빈도, %)

	구분	전체
근로계약서	작성했다	77(16.1)
	작성하지 않았다	402(83.9)
	계	479(100.0)
부모동의서	제출했다	159(33.3)
	제출하지 않았다	318(66.7)
	계	477(100.0)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법제도적 권리 보호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아르바이트에 관련한 조항들에 대한 인지 정도를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를 알고 있었다는 응

답자는 49.3%,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한다’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39.6%,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 동의서를 사업주나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67.7%, ‘일하다 다친 경우, 업주로부터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50.0%,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했을 경우, 평일 임금의 30-50%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39.4%로 각각 나타났다. 1가지 조항만 제외하고 모든 조항에서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과반수 이하로 나타나,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지식에 해박하지 못하며,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노동법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3>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지식 정도 (빈도, %)

구 분	알고 있었다	전혀 몰랐다	계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한 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222(49.3)	228(50.7)	450(100.0)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177(39.6)	270(60.4)	447(100.0)
18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 동의서를 사업주나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306(67.7)	146(32.3)	452(100.0)
일하다 다친 경우, 업주로부터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24(50.0)	224(50.0)	448(100.0)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했을 경우, 평일 임금의 30-50%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177(39.4)	272(60.6)	449(100.0)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이후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노정되며, 상대적으로 장시간, 고임금의 준 직업적 성격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가운데, 일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재학생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이러한 부당대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행위에도 무지하거나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쉼터, 기타 보호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소속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이후 첫번째 시간제 취업인 아르바이트 참여정도와 직종, 노동시간, 임금, 근로환경 등의 근로여건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이후 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68.8%로 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인 30%보다 훨씬 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용돈부족과 생활비 부족 해결이며 주로 학업중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주로 비교육적이고 유해한 불법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고임금의 준직업적 성격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가운데 일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재학생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이러한 부당대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자신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행위에도 무지하거나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적인 아르바이트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스스로 착취와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청소년 불법고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 역시 앞에서 제시한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침서’를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근로교육은 소극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법을 홍보하는 것에 그쳐서만은 안될 것이다. 청소년 근로교육을 직업교육의 차원으로,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택가능한 직업세계를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직업소개 프로그램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이 2005년 6월 20일부터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은 진일보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정책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업종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소개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업종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반대로 적극적인 방향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가칭, 학업중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의 전국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건전 아르바이트 직종, 장기적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장래 희망직업과 관련이 있는 아르바이트 직종이 개발, 지정, 홍보, 보급되어야 한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인적자원 및 직업능력개발의 청소년자립의 시각으로 전환하여 전일제 직업을 얻기 전까지의 직업준비 개념으로 인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기는 진로탐색 및 준비기간이므로 건전한 아르바이트 체험을 통해 청소년기에 다양한 직업세계를 살펴보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 자신의 진로발달을 위해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를 생계문제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다음의 전일제 직업을 준비하는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드는 오늘날의 아르바이트 현실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설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자경·홍지영·장유진(2001). 청소년의 자퇴욕구실태와 관련특성 연구,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전략.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광주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2002). 광주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광주청소년 아르바이트지원센터 개소기념 청소년아르바이트 지원방안 토론회 자료집.
- 김민(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3호.
- 박창남·임성택·전경숙·김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창남·도종수(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 10권 제 3호.
- 박창남(2004). 청소년노동에서 인권의 의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 6권 제 1호.
- 방하남·이상호(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 사회학 제 40집 1호.
- 서우석·정철영·이광호·채영병(2001). 경기도 실업계 고교 학생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진로 지도 및 상담활동 활성화 방안. 경기도 교육청.
-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2000). 십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연구. 서울특별시.
- 서울YMCA(200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서울YMCA 진로진학상담실.
- 양정호(2004).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 14권 제 1호.
- 유성렬(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 제 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광호 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실태 및 정책방안 모색 연구. 문화관광부.
- 이철위·박창남·정혜영(2000).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개발원.
- 이혜정(200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 일하는 청소년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소비욕구의 분출 인가? 일할 권리의 실현인가!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 서울 YMCA.

- 장원섭(2001). 중고등학생 시간제 취업경험의 의미. *직업교육연구* 제 20권 제 2호.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한국청소년학회.
- 참여연대 사회인권팀(2002). 청소년노동의 실태와 문제. 참여연대 알바권리찾기캠페인. 제1차 정책토론회.
- 한국교육개발원(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정책보고서.
- 표갑수(1993). 중고등학교학생의 중퇴요인과 대책. *청소년학연구*. 제 1권 제 1호.
- 황창순(1996). 청소년 학업중퇴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대책.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논문집* 2(1). 순천향대학교.
- Astone, N. M., & McLanahan, S. S.(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309-320.
- Barrington, B. L., & Hendricks, B.(1989). Differentiating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graduates, dropouts, and nongraduat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2, 309-319.
- Bryk, A. S. & Thum, Y. M.(1989). The effects of high school organization on dropping out: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6(3), 353-383.
- D'Amico, R.(1984). Does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impair academic progress?. *Sociology of Education*, 57, 152-164.
- Ekstrom, R. B., Goertz, M. E., Pollack, J. M., & Rock, D. A.(1986).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 from a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87, 356-373.
- Fine, M.(1991). *Framing dropout: Notes on the politics of an urban public high school*.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oldschmidt, R. & Wang, J.(1999). When can schools affect dropout behavior? A longitudinal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6(4), 715-738.
- Good, C. V.(1973). *Dictionary of Education*, 3rd ed. New York: McGraw-Hill, 198.

Page, G. T. & Thomas, J. B.(1977).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ducation*, New York: Kogan Page/Nicholas Publishing Company.

Rumberger, R. W.(1995). Dropping out of middle school: A multilevel analysis of students and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3), 583-625.

ABSTRACT

A Study on Work Experiences of School Drop-Out Youths

Lee, Kyeong-Sang* · Park, Chang-Nam**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investigate of school drop-out youths' work experiences. Main research concepts used in this study include such ideas as the rate of drop-out youths' part tim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the traits of work environment such as type of occupation, working hours,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surveying 828 school drop-out youths in the several institutes including alternative schools, career training centers, youth shelters, youth probation facilities and correction institutes for youth. The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 that 68.8% of the respondents have the experience of part tim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n economic grounds.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y have relatively long-time working hours and high wages in bad working conditions of not-good type of occupation. In regard of this, It is necessary that strengthening of control on illegitimate employment, positive education and recommendation of good type of occupation and so forth are socially presented to school drop-out youths.

Key Words : school drop-out, part time, employ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투고일 : 10월 29일, 심사일 12월 11일, 심사완료일 : 12월 18일

*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Korea Nazarene University